

#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승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48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이승미, 김성준, 김원태,  
김인제, 박강산, 박수빈,  
박승진, 박철성, 송도호,  
신복자, 왕정순, 이영실,  
임규호, 최기찬, 황유정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, 중장년층 내 다양한 사회·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- 특히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 등은 사회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생애전환기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지만, 현행 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.
- 한편, 「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이 일부 유사함에도 중장년 한부모가족은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간 연계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됨.
- 이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·다문화가족·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, 이들의 안정적인 생애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규정(안 제6조의4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4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: 면제
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: 면제
7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:  
면제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안
<p>제6조의4(사용료의 감면 등)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생애 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하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5. · 6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6조의4(사용료의 감면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    <u>지원대상자: 면제</u></p> <p>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    <u>다문화가족: 면제</u></p> <p>8. · 9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     음)</p> <p>7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    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     <u>이탈주민: 면제</u></p>

#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6조의4(사용료의 감면 등)	△	생애 재설계 지원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감소액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해당 통계자료 등이 적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안 제6조의4(사용료의 감면 등)에 의한 세입감소액은 서울시 관련부서(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) 문의결과 해당 통계자료 등이 적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⇒ 다만, 서울시 관련부서에 따르면 일부시설이긴 하나 기존 감면대상의 감면액<sup>1)</sup> 등이 크지 않고, 새로이 규정되는 대상들도 향후 이와 유사한 사용률을 보일 경우 세입감소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임

[참고]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

-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감면대상 통계 및 1인당 이용률을 활용하여 감면액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려고 하였으나, 수집가능한 통계자료가 제한적이므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기에는 추계합리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추정이 곤란함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중 헌

주 무 관            손 제 승

☎ 02-2180-7935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[감면대상 유사사례 고려] 서울시 관련부서가 제공한 『공유사무실 입주기업 감면 현황』에 따르면 시기별로 다르긴하나 연간 감면액은 2,500천원 정도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세입감소액도 크지 않다는 입장임